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16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박성민 · 정동만 · 박덕흠
구자근 · 강승규 · 이상희
나경원 · 윤영석 · 박형수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하여금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중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대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무기한으로 승계될 여지가 있으므로, 승계 기간을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라.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

마.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 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달성하도록 완화함(안 제49조제1항).

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3조의2제4항).

사.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49조의2 신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기창업기업”을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제38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 46조에 따라 그營業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 투자회사에게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 각 호”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다른”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3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로 본다.

제4조(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6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u>다른</u>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생략)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u>개인투자조합 또는 다</u> <u>른</u> ----- ----- -----. 13.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u>3</u> 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u>초기창업기업</u> 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 <u>5</u> <u>년</u> ----- ----- ----- ----- -----.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창</u> <u>업기업</u> -----

<신 설>

<신 설>

③ · ④ (생략)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1. 초기창업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
기업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illegible]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생략)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략)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 8. (생략)

② ~ ⑤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

-----.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생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5
년-----

-----.

② -----5
년-----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5. ~ 1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

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5.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

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 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營業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게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

<삭 제>

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 ⑦ (생략)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삭 제>

② -----

-----제1항-----

-----제

1항-----

-----.

③ 제1항-----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u>3년</u>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u>다른</u>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④ ----- ----- -----<u>5년</u>----- ----- ----- ----- --<u>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u>-----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